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29 선고 2022나11324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29 선고 2022나113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합656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권영빈

변론 종결2024. 4. 24.

판결 선고2024. 5. 29.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합6563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에 "을 제7, 12, 13, 14호증, 이 법원의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뒤에 "(원고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당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J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아무런"을 "납득할 만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계약 이후 F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가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및 위 계약상 주식매매대금의 합계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위 계약을 체결하여 E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 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및 위 계약상 주식매매대금 합계액을 밑도는 수준이었고, 갑 제17, 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5. 11.경 이미 원고가 보유하는 E 주식 285,000주를 피고에게 대금의 정함 없이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및 합의를 작성한 바 있는 점, ③ E는 이 사건 제1 계약서 작성일에 가까운 2015. 11.경 피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56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도 원고와 위 주식양도증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E의 재무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2015. 11.경 원고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E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18행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를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기우종

판사이형원

판사신옥영